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.”



## 법원행정처

수신자 임그루(3632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A동 103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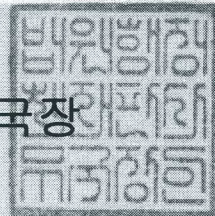
경유

제목 민원회신(임그루)

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(2016. 10. 24. 신청번호 : 1BA-1610-117816)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
1.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행정사건에 대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장 명의로 답변을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.
2. 헌법 제103조는 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.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할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, 항고,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.
3. 그리고 민원회신문의 발송명의로에 대하여 『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』 제4조 2항에 따라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, 법무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([www.klac.or.kr](http://www.klac.or.kr) 전화 국번 없이 132) 등의 유/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재판사무국장



법원주사보

채대원

법원사무관

한소정

과장

代김창남

국장

11/30  
박완식

협조자

시행

종합민원과-11300

( 2016.11.30. )

접수

( )

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

/ <http://www.scourt.go.kr>

전화 02-3480-1423

/전송 02-536-0296

/ [wony76@scourt.go.kr](mailto:wony76@scourt.go.kr)

/ 공개